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전북 진안군)’이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되었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제조일자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복분제국 (전북 진안군)	복분제국(15.5%) (과실주)	아황산류 (차아황산나트륨)	2023. 4. 12.	365mL	1,112.52kg (3,048개)	광주지방 식약청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동희 (043-719-2051)
		담당자	사무관	최우정 (043-719-2055)
협조 부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장현철 (062-602-1415)
		담당자	사무관	고경희 (062-602-1435)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표시)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품명:</b> 복분제국(15.5%)</li> <li>• <b>식품유형:</b> 과실주</li> <li>• <b>제조업체(소재지):</b> 복분제국(전북 진안군)</li> <li>• <b>내용량:</b> 365mL</li> <li>• <b>제조일자:</b> 2023. 4. 12.</li> </ul>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